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57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박상혁 · 한민수 · 허영
이해식 · 문진석 · 김주영
이연희 · 김영환 · 김한규
강경숙 · 최혁진 · 박용갑
박수현 · 김기표 · 김우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도주하더라도 물적 책임의 부담이 적으므로 비용 부담을 가해자가 하도록 하여 물피도주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주·정차된 차를 손괴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떠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9

조 제1항 제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등의 구상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u>사고(「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② (생 략)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사고</u> ② (현행과 같음)